

귀화·국적회복 신청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관련 상세 설명자료 및 Q&A

- 귀화 및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징구에 관한 지침이 2019. 4. 29.부로 개정되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상세 설명자료 및 질의응답자료(Q&A)**를 공지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무 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 개 요

가. 목적

- 국적신청자의 해외 범죄경력 여부를 확인하여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외국인의 국적취득을 방지하기 위함

나. 근거법령

- 국적법 제5조제3호, 제6호 및 제9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2. 제출 대상

가. 원칙

- 만 14세 이상인 사람(수반취득 신청자 포함)
- 귀화·국적회복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통산 1년 이상을 제3국에서 거주한 경우 그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나. 예외(제출 생략)

- 아래 ① ~ 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국 및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공통사항

- ① 만 14세 미만인 사람(형사미성년자)
- ② 국내에서 체류허가, 귀화·국적회복 신청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이미 제출한 적이 있는 사람이, 이후 출국 사실이 없거나 출국 후 해외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 ③ 국내출생자 또는 만 14세 미만이었을 때 입국하였다가 만 14세 이후에 출국한 사실이 없거나, 만 14세 이후 출국하여 외국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출국 중 국내 입국하여 국내에 1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외국에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간주

- ④ 천재지변, 내전 등으로 본국 또는 제3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접수 관서는 신청인에게 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사정을 소명하도록 하고 그 사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본부에 제출 생략 승인 상신

귀화 신청자

- ⑤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에서 규정한 특별공로자 또는 우수 인재에 해당하여 특별귀화를 신청하는 사람
- ⑥ 귀화 신청일까지 대한민국에서 2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거주한 사람
- ⑦ 난민법 제18조에 따른 난민인정자 및 동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도적 체류자(단,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은 그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국적회복 신청자

- ⑧ 상기 ⑤에 해당하여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사람
- ⑨ 국적회복 신청일까지 대한민국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거주한 사람
 - ** 출국 후 외국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
- ⑩ 만 60세 이후에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사람

3. 범죄경력증명서 구비 요건

가. 발급기관 및 요건

- 본국(제3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서, 본국(제3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 주한 자국공관장이 발급한 증명서는 불인정(단, 러시아 제외)
 - ※ 러시아는 러시아연방 내무부 훈령 1121호(11.7.11)에 따라 러시아 재외공관에서 자국민에 대한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러시아 국적자는 주한러시아 대사관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허용
 - 본국 내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소관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 ※ 중국의 경우, 발급기관·양식·명칭 등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한 점 고려, "범죄경력 증명에 상응하는 모든 문서(파출소 발급본 포함)" 인정
 - ※ 미국의 경우, FBI본부의 범죄경력증명서(본인이 직접 발급 받거나 FBI에서 공인한 채널러를 통하여 발급)를 제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정부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도 미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발급된 경우 제출 허용

나. 인증절차 등

-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가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 * 아포스티유 :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제도
- 아포스티유협약 미가입국가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 ※ 다만 중국의 경우 "중국 공증처 공증과 외교부 인증"을 거쳐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함(135.13부 주중공관 사증발급 시 징구하는 범죄경력증명서 확인 절차 준용)
 - ※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 국민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아포스티유 미가입 국가 국민과 같이 우리 영사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단, 부득이한 사유 등을 서면으로 소명 필요)

- 범죄경력증명서 번역본 첨부 : 번역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 첨부(공증은 선택사항)

다. 유효기간

- 원칙 : 귀화·국적회복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 통상 공문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나 신청자가 증명서 발급 신청을 위해 국적국을 방문하여야 하는 점 등 고려
- 예외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내에 입국하여 출국한 적이 없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초과했다라도 인정 가능

라. 제출 시기

- 원칙 : 귀화·국적회복 신청 시
- 예외 : 귀화·국적회복 신청 후 출국하여 외국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거주국의 범죄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 * 출국 중 국내 입국하여 국내에 1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외국에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간주

4. 행정사항

- 시행일자 : 즉시
 - 다만,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연령 하향 규정(19세→14세)은 '19. 7. 1. 부 시행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 조회
 - <https://www.apostille.go.kr> - 홈페이지 바로가기 - 서비스안내 - 아포스티유제도 소개

□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2019. 5. 14. 현재 117개국 가입)

| 지역 | 국가명 |
|---------------|--|
| 아시아, 대양주 (17) |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셜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필리핀 |
| 유럽 (52) |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기스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
| 북미 (1) |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
| 중남미 (29) |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엔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볼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볼리비아, 가이아나 |
| 아프리카 (12) |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브룬디,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 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
| 중동 (4) |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모로코, 튀니지 |



Q1) 국적취득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은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답변)

- 국적취득 신청자 중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입니다.
- 다만, 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제출이 면제됩니다.

Q2) 한국 비자를 발급받을 당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사람도 귀화(국적회복)를 신청할 때에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답변)

- 비자 신청 시점과 귀화 신청 시점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전에 비자 신청 당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귀화(국적회복)를 신청할 때에는 새로이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3) 귀화(국적회복) 신청자는 누구나 예외 없이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답변)

- 아닙니다. 아래 ①~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귀화·국적회복 공통 면제대상

- ① 만 14세 미만인 사람(형사미성년자)
 - ② 국내에서 체류허가, 귀화·국적회복 신청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이미 제출한 적이 있는 사람이, 이후 출국 사실이 없거나 출국 후 해외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 ③ 국내출생자 또는 만 14세 미만이었을 때 입국하였다가 만 14세 이후에 출국한 사실이 없거나, 만 14세 이후 출국하여 외국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 * 출국 중 국내 입국하여 국내에 1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외국에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간주
- ④ 천재지변, 내전 등으로 본국 또는 제3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접수 관서는 신청인에게 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사정을 소명하도록 하고 그 사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본부에 제출 생략 승인 상신

귀화 신청자 중 면제대상

- ⑤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에서 규정한 특별공포자 또는 우수인제에 해당하여 특별귀화를 신청하는 사람
- ⑥ 귀화 신청일까지 대한민국에서 2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거주한 사람
- ⑦ 난민법 제18조에 따른 난민인정자 및 동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도적 체류자(단,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은 그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국적회복 신청자 중 면제대상

- ⑧ 상기 ⑤에 해당하여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사람
 - ⑨ 국적회복 신청일까지 대한민국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거주한 사람
- ** 출국 후 외국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 한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
- ⑩ 만 60세 이후에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사람

Q3-1) 결혼이민자로서 비자를 발급받을 때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적이 있고, 이후 국내에 체류하다 친정이 있는 외국을 방문하여 8개월간 계속 머문 후 한국에 다시 입국해 귀화를 신청하려는데 다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 Q2)의 답변에서와 같이 비자 발급을 신청할 때에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귀화를 신청할 때에 다시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한국에서 체류하던 중 외국에 있는 친정 방문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6개월 이상 계속 한국을 떠나 있었다면 그 기간에 체류한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외국에서의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Q4) 예전에 귀화(회복)를 신청하였으나 불허되어 귀화(국적회복)을 재신청하는 경우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재차 제출하여야 하나요?

답변)

- 원칙적으로 귀화(국적회복)를 재신청할 때에도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종전에 귀화(국적회복) 신청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 ① 과거에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이후 현재까지 해외로 출국한 적이 없는 경우
 - ②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이후 해외로 출국하였으나 해외

- 8 -

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 다만, 위와 같이 면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외국에서의 범죄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법무부장관이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Q5)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해 외국을 방문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데 한국에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안 될까요?

답변)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는 본국(제3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이어야 하며, 그 국가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거나(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 경우)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인 경우)을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한국에 있는 자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5-1) 외국의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주정부)에서 발급받은 범죄경력증명서도 인정이 되나요?

답변)

- 원칙적으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는 그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 그 국가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 9 -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국적국의 지방정부(주, 성 등)에서 발급받는 경우, 전국의 범죄경력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중앙정부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6) 본국 뿐만 아니라 제3국의 범죄경력증명서도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답변)

-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통산 1년 이상을 제3국에 체류한 경우 그 제3국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중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 최근 3년 이내에 '캐나다에 6개월, 미국에 6개월, 일본에 1년 체류 후 다시 캐나다에 7개월' 체류하였다면 통산 기간이 1년 이상인 캐나다 및 일본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대상기간은 귀화(국적회복)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의 기간에 한합니다.
※ 예를 들어, 중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 귀화신청일로부터 2년 6개월 전부터 그 이전 3년 동안 캐나다에서 체류한 경우, 귀화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중 제3국 체류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므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귀화·국적회복 신청 후 출국하여 외국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거주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Q7) 해외 범죄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 10 -

답변)

- 공문서의 유효기간은 통상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나, 귀화(국적회복)를 신청하는 사람이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본국을 방문하여야 하는 등 발급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귀화(국적회복) 신청 이전 6개월 내에 발급된 범죄경력증명서도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 Q3-1)의 6개월 이상 체류한 국가 또는 Q6)의 제3국도 같습니다.

Q8) 해외 범죄경력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 '아포스티유'란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 아포스티유협약에 가입한 국가들 사이에서는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하여 해당 문서를 발급한 국가에 있는 자국공관의 영사 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고 그 대신 공문서를 발행한 국가의 정부기관(통상 외교부)이 이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의 발급 국가가 아포스티유협약에 가입된 경우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시면 그 증명서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Q9) 아포스티유협약 미가입 국가인 경우에는 범죄경력증명서의 진위를 어떻게 인증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11 -

-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국가가 아포스티유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근무하는 영사의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 다만,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기 전에 '중국 공증처 공증과 중국 외교부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Q10) 해외 범죄사실이 있는 사람은 귀화(국적회복)가 불허되나요?

답변)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취지는 귀화(국적회복) 하여 새로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이 되려는 사람이 기존 구성원과 원만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품행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해외 범죄경력이 있더라도 항상 귀화(국적회복)가 불허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범죄의 경중과 범질서 준수 의식 및 체류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적법 제5조제3호,6호 및 제9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행단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